#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921

발의연월일: 2020. 9. 15.

발 의 자:윤관석·김교흥·김병욱

김영배·박광온·박찬대

유동수 · 이상헌 · 이성만

이장섭 · 정일영 · 허종식

의원(12인)

## 제안이유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는 자본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다수 투자자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중대한 위법행위이며, 자본시장의 거래규모가 확대되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그 수법도 지능화·조직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현행 자본시장법 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징역형, 벌금형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나, 형사처벌의 경우 범죄 구성요건에 대한 엄격한 입증책임이 요구되어 상당수의 불공정거래행위는 불기소되거나 기소되는 경우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등 경미한 수준의 처벌에 그치고있음. 또한 수사, 기소, 소송 등 형사절차에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형사처벌만으로는 점점 더 지능화되고 고도화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신속하게 처벌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신속하게 제재하고 관련 부당이득을 박탈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과징금 부과와 형사처벌 절차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금융위원회가 검찰로부터 수사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과징금 부과에 활용할 수있도록 하였음.

### 주요내용

- 가.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안 제429조의2제1항).
- 나. 금융위원회는 검찰총장으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결과를 통보받은 후 과징금을 부과하되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 혐의를 검찰총장에게 통보하고 검찰총장과 협의된 경우 또는 혐의를 통보하고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수사·처분결과를 통보받기전이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안 제429조의2제2항).
- 다. 같은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 거나 벌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에서 제외할 수 있음(안 제 429조의2제3항).
- 라. 검찰총장은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수사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음(안 제429조의2제4항).

#### 법률 제 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9조의2의 제목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익"으로 한다.

- ①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1. 제17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누설하거나, 장내파생상품 및 그 기초자산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자 2. 제174조를 위반하여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한 자

- 3. 제176조를 위반하여 시세조종행위를 한 자
- 4. 제178조를 위반하여 부정거래행위를 한 자
- ② 금융위원회는 검찰총장으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수사·처분결과를 통보받은 후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사·처분결과를 통보받기 전이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1. 금융위원회가 제1항 각 호의 혐의를 검찰총장에게 통보하고 검찰총 장과 협의가 된 경우
- 2. 제1호에 따른 통보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 ③ 같은 행위에 대하여 제443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제1 항의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거나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 해당 금액을 포함한다)을 과징금에서 제외할 수 있다.
- ④ 검찰총장은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수사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429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따른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혀 했 개 정 아 제429조의2(시장질서 교란행위에 제429조의2(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신 설> 대한 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 여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 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 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 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 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 래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하 여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5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7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누설하거나, 장내파생상품 및 그 기초자산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자

<신 설>

<신 설>

- 2. 제174조를 위반하여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를 한 자
- 3. 제176조를 위반하여 시세조종행위를 한 자
- 4. 제178조를 위반하여 부정거 래행위를 한 자
- ② 금융위원회는 검찰총장으로 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수사・ 처분결과를 통보받은 후 과징 금을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사・처분결과 를 통보받기 전이라도 과징금 을 부과할 수 있다.
- 1. 금융위원회가 제1항 각 호의

   혐의를 검찰총장에게 통보하

   고 검찰총장과 협의가 된 경

   오
- 2. 제1호에 따른 통보 후 1년이경과한 경우
- ③ 같은 행위에 대하여 제443 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 우에는 제1항의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거나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 해당 금액을 포함한다)을 과징 금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신 설>

금융위원회는 제178조의2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에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5배에 상당하는 금액이 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u>4</u>	검찰총	장은	금융의	위원회가
제1호	항에 따	라과	징금을	부과하
7]	위하여	수사	관련	자료를
요구	하는	경우에	는 이	를 제공
할 ~	수 있다	<u>•</u>		
(5)				
		o] <u>c</u>	일	
			 ·	